

한글

장례문화 종합 가이드북

한글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장례문화 종합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에 기재된 내용은 보편적 장례문화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정별, 지역별, 종교별 특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禮

Korea
Funeral Guide Book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발행일 2021년 10월

기획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디자인 위트브랜딩 연구소

포토그래퍼 산이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04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91
대성빌딩 4층(서계동)

02. 3472. 4444

www.fta.or.kr

죽음이 어디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합니다.

루시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語錄 중에서>

*It is uncertain in what place death may
await the
therefore expect it everywhere.*

*Lucius Annaeus Seneca
<Among the quotes>*

다가선
준비없이

이별

아름답게
삶의
끝으로

종업가이드북
장례문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프거나
당지 못하는 곳에 있잖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길에
한번 떠나버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잘해주든 못해주든

위기철 〈아름다운 인생〉 중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죽음이나 이별이 슬프니까 답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회장 박일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시간과 죽음이라 할 것입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주어지는 24시간은 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죽음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에게서는 닥치지 않을 것이고 이왕이면 천천히 오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과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이러한 생각으로 불로초를 찾아다녔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준비의 연속입니다. 학교 등의 입학 준비, 회사 입사준비, 결혼준비, 여행준비 모든 인생은 준비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 과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국장례협회 회장이며 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많은 죽음을 옆에서 목도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내 가족의 갑작스러운 장례로 당황스러워하고 생애 몇 번 겪어보지 못한 장례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미리 준비하지 못함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자 하여도 유독 죽음과 장례 관련 분야는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며 관련 서적, 자료, 정보 등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장례협회에서 죽음의 준비와 장례절차, 장례 후 마무리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례문화 종합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회 장 박 일 도

박 일 도

Part. 01	유언 18
	이별준비 & 이별준비노트(사전장례의향서) 28
임종 전 준비사항	영정사진 준비 3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4
	정부지원관련 사항 40

Part. 02	사망관련 서류 발급 46
임종 후 준비사항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 50
	관, 수의
	부고 56

Part. 03	장례절차 64
장례	현대장례, 국가장
	종교별 장례 76
	불교, 기독교, 천주교
	장사방법 88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납골), 해양산분
	개장 98

Part. 04	문상절차 108
문상	문상예절 116
	문상시기, 문상시 옷차림, 부의봉투 작성방법
	문상 시 인사말, 문상 시 삼가야 할 일
	종교별 문상예절

Part. 05	사망신고 128
장례 후 준비사항	답례인사 130
	재산조회 131
	상속관련 136
	유족연금 140
	유품정리 144

Part. 06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150
장례관련 유용한 정보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154
	표준약관 157
	인체조직기증 158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16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61

葬禮

臨終前

임종 전

Part.

01

임종 전 준비사항

Preparation
before
Death

유언

이별준비&이별준비노트 (사전장례의향서)

영정사진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부지원관련 사항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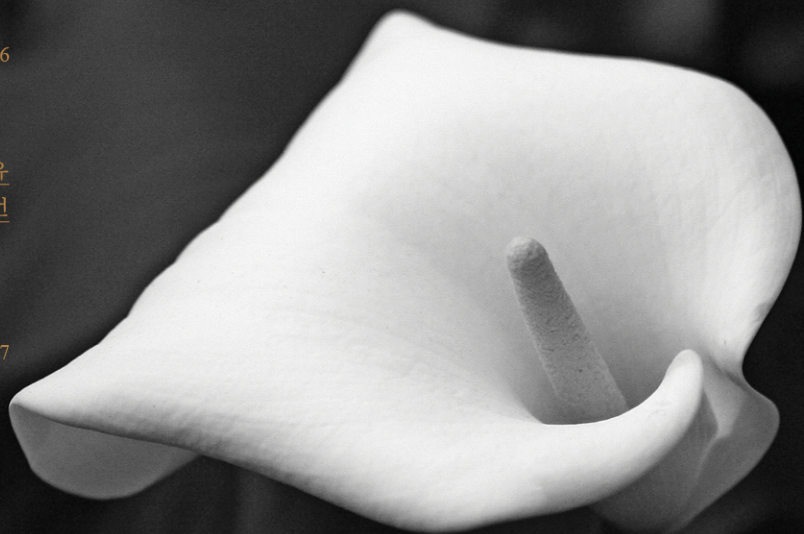
유언

遺言

16

유언

17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민법(제1060조)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
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작성할 시 효력이 발생
합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가족관계 사항	친생부인 ❶, 인지 ❷, 후견인의 지정 등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 ❶ 친생부인 아내가 혼인 중에 가졌다고 추정되는 자식을 남편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
❷ 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생모가 자기의 자(子)로 인정하는 것을
법률상 '인지'라고 함.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5가지)

①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1명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형태의 유언으로 음향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을 해야 합니다.

(음반, 테이프, 필름, 비디오 동영상 촬영 등)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과 작성일자,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하며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 타인이 대필한 경우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거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 자필증서를 작성하여 복사한 경우
- 연, 월만 기재한 경우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예]

자필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자필로 작성합니다.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000만원은 장녀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면, 번지)은 처에게 준다.
4. (서울시 구 동 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6. 장례방법 등
7. 가족에게 당부할 사항 등

2021. 1. 1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00번길
유언자 홍길동 (인)

※ 1번에서 5번은 법정 유언 사항입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정례 방법, 사후 남은 가족에게 당부할 말 등도 기재할 수 있으나 유족, 상속인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증 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공정증서의 특징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 해결이 쉬워집니다.
-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유언의 검인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원할 때 이용합니다.

엄봉날인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징

-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증서의 전문과 연, 월, 일, 주소, 성명도 자신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비밀증서의 방식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도 자필증서로 유효하게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예]

비밀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000만원은 장녀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면, 번지)은 처에게 준다.
4. (서울시 로 길)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2021.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 홍희동 (인)

(유언장 봉투)

홍길동의 유언장

제출일 2021.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증 인 김대한 (인)
증 인 이민국 (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 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예]

구수증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유언장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로 ○○길)는 2021. 1. 10.
○○병원 ○○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된 약 000만원은 장녀 ○○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면, 번지)은 처에게 준다.
4. ○○○(서울시 ○○구 ○○동 ○○○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로 한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
하였습니다.

2021.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증인) 김대한 (인)
증인 이민국 (인)

기타 주의사항

위 항목 중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의 **날인**(도장을 찍음)
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외의 4개 항목은
날인 혹은 서명이 요구됩니다.

-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
어진 유언을 따릅니다.
-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
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릅니다.

1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2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3 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증인 섭외가 필요한 유언과 인원

녹음유언	1명 이상
공정증서유언	2명
비밀증서유언	2명 이상
구수증서유언	2명 이상

이 별

離別

26

이
별
준
비

29

“

이별준비(離別準備)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자연장 이용·실천을 통해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이별준비 & 이별준비노트

‘이별준비’는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자연장 이용·실천을
통해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이별준비노트(사전장례의향서)

이별준비노트(사전장례의향서)는 내가 원하는 장례 방법과
절차를 미리 작성하여 나의 뜻에 따른 장례를 치르기 위한
편지로 이별준비 노트를 통해 나의 장례 방법을 가족 및
친지와 미리 상의하고 준비한다면, 남겨진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준비노트 작성 및 관리절차

이별준비노트는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장례 방법에 대해
가족들과 논의하신 후 책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별준비노트 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시거나 다운로드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별준비 <http://ebjb.kr/>

이별준비노트 <http://ebjbnote.kr/>

이별준비노트

28

이
별
준
비

29

내가 원하는 장례방법과 절차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검소하고 품위있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이별준비노트를 통해 나의 장례방법을 가족 및 친지와 미리 상의하고 준비한다면, 남겨진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장사시설 이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A~D 중 한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장례방법

1. 화장을 원하십니까? 매장(묘지)을 원하십니까?

- ① 화장 ② 매장 (묘지)

2.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 후 어디에 안치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자연장지 ② 봉안(납골)당 ③ 기타 ()

3. 자연장을 선택하셨다면, 원하는 자연장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 ① 천디형 ② 화초형 ③ 수목형 (조성지) ④ 수목장림(임야)



장례식

1. 장례 기간

- ① 3일장 ② 5일장 ③ 기타 ()

2. 장례 형식

- ① 전통(유교)식 ② 불교식 ③ 기독교식 ④ 천주교식 ⑤ 기타 ()



3. 부고의 범위

- ① 직계 가족 ② 가까운 지인 ③ 최대한 많은 조문객 ④ 기타 ()

4. 제단 장식 · 장례 용품

- ① 관례에 따라 ② 간소하게 ③ 호화롭게

5. 부의금 · 화환

- ① 관례에 따라 ② 가급적 제한 ③ 전혀 받지 않음

6. 수의

- ① 평소 즐겨 입던 옷 ② 전통 수의 ③ 한복 ④ 기타()

남기고 싶은 말

◎ 가족에게

사진

◎ 문상객에게 (고인소개문 / 고인추모영상 등에 담을 내용을 적어도 됨)

솔직한 마음을 담아 작성하였으니, 위와 같이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영정 影幀 사진 준비

30

영
정
사
진

31

“

영정사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평상시 고인의 일상생활 사진이나 증명사진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

영정사진

영정사진 제작 및 준비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길이 생전의 좋은 기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준비합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장례식장에 문의 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정사진 보관

장례를 모두 마치고 영정리본을 제거한 다음 사진을 집에 보관하며 제사 또는 추모 시 사용하거나 방 또는 거실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착용했던 상복과 장례 용품 등과 함께 소각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유품정리 업체를 통해 정리하기도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32

연
명의
료
의
향
서

33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호스피스^④ 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④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을 베푸는 봉사활동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 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 상	19세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작 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 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https://www.lst.go.kr/>

1855-0075

葬禮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8호 제1항 (앞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시 여두줄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당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당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 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정부 지원

38

정
부
지
원

41

“

장례 전 장례지원 비용 및 장제비, 사망일시금 등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둡니다.

”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대 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
지급액	1구당 80만원 지급
신 청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화장시설 사용료 및 장사시설(봉안당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사망일시금

대 상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지급액	사망자별 지급액 상이(등급, 유족 등) * 지방보훈청으로 문의
신 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문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 <https://www.lst.go.kr/>

☎ 1855-0075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대 상	참전유공자
지급액	장제보조비 20만원
신 청	국가보훈처

재해사망자 장례비

대 상	재해로 사망한 자
장례방법	①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장례비 지급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②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관할하는 시, 군, 구청

그 외 (해당 기관으로 문의)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공무원 유족보상금	소속기관 (연금취급기관)
공무원 사망조위금	
① 국가직공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부)
② 지방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
③ 교육직공무원	시, 도 교육지원청
군인 사망조위금	소속부대 (소속부대로 문의)
별정우체국 사망조위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02-3278-7700
근로자 장의비	사업체 (사업체로 문의)
사립교직원 사망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1588-4110
산업재해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순직선원 장제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051-996-3647
어선원 장제비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조합으로 문의)

葬禮

臨終後

임종 후

Part.

02

임종 후
준비사항

Preparation
Death

사망관련 서류 발급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
• 관, 수의
부고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사망관련 서류

44

사망관련서류

47

“

자연사, 병사, 사고사, 변사 등에 따라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 종류, 외인사 사항과 사고발생장소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망관련 서류 발급

①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요 부수 약 7~10부 이상
- ㉡ 발급처 병원 (담당의사)

② 시체검안서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 (자택, 요양보호시설 등)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요 부수 약 7~10부 이상
- ㉡ 발급처 병원(의사), 검안의

③ 검사지휘서 또는 검시필증

병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한 경우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검사 지휘서 또는 검시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 필요 부수 2부
- ㉡ 발급처 관할 경찰서

④ (사망사실)인우보증서

노환 같은 자연사가 확실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로 통장을 포함한 2명의 보증인을 세워 사망 진단서를 인우보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㉑ 필요 부수 1부
- ㉒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연번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명		③ 성별 []남 []여
② 주민등록번호	- ④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업
⑥ 주소		
⑦ 발병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⑧ 사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⑨ 사망장소	주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용 중 사망 [] 기타()	
⑩ 사망의 원인	(가) 직접 사인 (나) (가)의 원인 (다) (가)와 (라) (가)의 원인 (라) (가)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⑪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사건 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의도성 []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익사 [] 화재 [] 기타() 여 부 [] 타살 [] 미상	
⑫ 의인	사건 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사망사실	주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기타()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검안)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 년 월 일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용)]



필요 부수

화장 / 매장용, 장례식장 제출용, 사망신고용, 보험 및 상속용, 기타 등에 제출용으로 필요한 만큼 발급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

48

장
례
식
장
및
용
품

51

“

예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며, 전문지식을 갖춘 장례 지도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장례식장 및 장례용품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병원에 부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병원 장례식장과 장례식장만 별도로 운영하는 전문장례식장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100여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선정 시 고려사항

- ◎ 교통의 편리성 및 접근성
- ◎ 가격의 적정성
- ◎ 친절한 장례서비스 제공
- ◎ 장례식장 편의시설

장례식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빈소사용료, 장례용품, 음식, 가격, 서비스 등에 대해 사전에 비교 가능하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상조회사

선불식 상조란 정해진 상품가격을 60개월 또는 100개월 등으로 나누어 매월 해당 금액을 상조회사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상조상품에는 장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용품 (관, 수의)

수의나 관은 종류나 가격, 구성품이 다양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시는 장례식장에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 (棺)

우리나라의 관 종류는 목관(나무로 만든 관), 옹관(항아리 모양의 토기관), 석관(돌로 만든 관) 등이 있으며 현대에는 목관을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또 목관도 탈관용, 매장용, 화장용, 개장용으로 구분되며 같은 나무라도 두께, 품질, 통판, 모양, 크기, 재질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목 관



옹 관



석 관

목관의 종류

오동나무 관

습기에 강하고 가벼우며 화장시, 탈관시 이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소나무 관

내구성이 강하고 가공이 쉬우며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며, 주로 매장시 사용합니다.

향나무 관

방습과 방충에 효과가 있고 내구성이 강하며 가장 비쌉니다. 주로 매장시 사용합니다.

수의 (壽衣)

수의는 시대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달라졌으며, 장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의의 소재도 삼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

명 주 (비단)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무늬가 없는 견직물

삼 베 (대마)

대마의 겹질을 벗겨 가늘게 찢어 실로 만들어서 짠 직물

아 마 (린넨)

아마 식물의 줄기로 만든 섬유

저 마(모시)

썰기풀과 모시풀로 만든 섬유

면 (무명)

목화 씨앗에서 실을 뽑아 만든 원단

인 견

목재펄프에서 가늘게 실을 뽑아 만든 원단

합 성 (면+폴리)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섬유

안동포, 남해포, 보성포 등

해당지역에서 생산한 국내산 삼베(대마)로 제작한 수의

가격

20만원대 ~ 수천만원까지 수의의 가격은

소재, 원단의 생산지, 제작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정확한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구성품 (남)

남 성

장매 ④, 이불, 요, 두루마기, 겹바지, 속바지, 겹저고리, 속저고리, 배개, 버선, 약수(장갑), 오낭(다섯개의 주머니), 데님, 허리띠, 턱받이, 행전, 면모, 면포, 도포, 도포끈



20종

- | | | | | | |
|--------|--------|-------|--------|-------|-------|
| ① 장매 | ② 이불 | ③ 요 | ④ 두루마기 | ⑤ 겹바지 | ⑥ 속바지 |
| ⑦ 겹저고리 | ⑧ 속저고리 | ⑨ 배개 | ⑩ 버선 | ⑪ 약수 | ⑫ 오낭 |
| ⑬ 데님 | ⑭ 허리띠 | ⑮ 턱받이 | ⑯ 행전 | ⑰ 면모 | ⑱ 면포 |
| | | | | ⑲ 도포 | ⑳ 도포끈 |

수의 구성품 (여)

여성

장매, 이불, 요, 속바지, 겹바지, 속치마, 겹치마, 속저고리, 겹저고리, 배개, 버선, 약수(장갑), 오낭(다섯개의 주머니), 턱받이, 면모, 면포, 원삼, 원삼끈



18종

- | | | | | | |
|--------|--------|--------|-------|-------|-------|
| ① 장매 | ② 이불 | ③ 요 | ④ 속바지 | ⑤ 겹바지 | ⑥ 속치마 |
| ⑦ 겹저고리 | ⑧ 속저고리 | ⑨ 겹저고리 | ⑩ 배개 | ⑪ 버선 | ⑫ 약수 |
| ⑬ 오낭 | ⑭ 턱받이 | ⑮ 면모 | ⑯ 면포 | ⑰ 원삼 | ⑱ 원삼끈 |

부고

訃告

54

부고

57

“
초상 당일에 친척과 동료, 친구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일이 ‘부고’입니다.” ‘부고’라고 표현한 이유는 빨리 달려가서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

임종
후
준비
사항

부고

고인이 돌아가시고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에게 부고를 보냅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을 통해 모바일 부고를 주로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부고를 알릴 때 상주의 이름이 아닌 호상^⑤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나 호상의 이름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일부 가족장, 기업장, 국가장에서는 별도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호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부고문자 내용

- | | |
|---------|--------|
| • 고인명 | • 빈소 |
| • 상주명 | • 발인일시 |
| • 연락처 | • 발인장소 |
| • 별세일시 | • 장 지 |
| • 장례식장명 | |

⑤ 호상 초상 때 상례에 관한 일을 주선하고 보살피는 사람

부고문자

부고 양식

訃 告

○○회사 ○○○社長(사장)남께서 2010年○月○日○時○○分
속환으로 別世하셨습니다.(享年○○歲)
生前에 社長님께 배품어주신 厚意에 깊은 감사드리오며
다음과 같이 永訣式을 거행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發殯日時: 2010年○月○日 오전 ○시 ○○분
場 所: ○○병원 ○○호실
場 地: ○○도○○시○○면 산 17번지 선영

2010年 ○月 ○日

장례위원장 ○○○

主 婦 : ○○○ 孫 : ○○
長 男 : ○○ 孫 女 : ○○
次 男 : ○○
長 女 : ○○
長 子 : ○○
婦 子 : ○○
婿 : ○○

訃 告

김○○ 부친 金海金公○○○께서 ○○○년○월○일
오후○○시○○분으로 別世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구○○○병원 장례식장 ○○○호
영결인시 ○○○년○월○일 오전○○시

장지 ○○○면○○○장례식장 ○○○호
장지도○○시○○면○○○

부인 ○○○ 손자 ○○○
딸 ○○○ 손녀 ○○○

아들 ○○○ 외손자 ○○○
말 ○○○ 외손녀 ○○○

미느리 ○○○ 운 ○○○
사위 ○○○ 운 ○○○

호상 홍길동

연락처 빈소(○)○○○-○○○-○○○

*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예시 1

故○○○님께서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 향년 ○○세
별세 ○○○년 ○월 ○일 ○○시
빈소 ○○○장례식장 1호실
발인 ○○○년 ○월 ○일 ○○시
장지 ○○○공원
상주 ○○○

연락처 : 010-0000-0000

예시 2

경영지원팀 소속 ○○○님의 부친께서
○월○일 지병으로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고인 ○○○ 향년 ○○세
별세 ○○○년 ○월 ○일 ○○시
빈소 ○○○장례식장 1호실
발인 ○○○년 ○월 ○일 ○○시
장지 ○○○공원
상주 ○○○

연락처 : 010-0000-0000

소 나 풍 비 , 의 꿈

이 병 찬 편저

(2010) 웰다잉교육의 이론과 실제 (웰다잉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p261

초록이 숨 쉬는 자연과 하나 되어
오르는 소풍길, 걸음도 가벼워...

형형색색 흐드러진 들꽃축제의 손님
영혼의 무게만큼이나 가벼운 날갯짓과 고운 자태
이 꽃 저 꽃 넘나드는 그 자유함과 달콤한 속삭임
머무는 자리자리, 넘치는 사랑

찬란한 햇살 가득 들꽃과 나비의 현란함에 농익는 축제의 향연
스치는 바람결, 묻어나는 알싸한 향내에 취해
드러눕는다. 쪽빛 하늘을 향해

아. 아름다운 인생이여, 행복이여, 나의 소망이여!
불디불은 석류보다 더 짙고,
불계 타오르는 열정으로 노래하라.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라.
자유로운 영혼을 소망하라.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葬禮

葬禮

장례

03

Part.

장례

Funeral
ceremony

장례절차
종교별 장례
장사방법
개장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장례 절차

葬禮

62

장
례
절
차

65

“

장례는 상례의 일부분으로 장사(葬事)를 치른다하여 상례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며,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의 죽음을 사회화하고 애도의 과정을 밟는 것을 말합니다.

”

장례절차

전통장례절차 (유교상례절차)

전통장례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용어의 설명 및 해석을 요하여 이 가이드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전통장례절차의 확인은 한국장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장례

사망 당일 수시(收屍)를 행하고, 사망 다음 날 염습과 입관 3일째 발인을 하게 됩니다.

일자별 장례절차



전통장례절차

www.fta.or.kr

1 일차



임종 및 이송

자택에서 사망 시 병원 또는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고, 병원
에서 사망 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합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가 발급하며 필요에 따라 7~10통 정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고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수시를 합니다.

※ 수시용품

수시복, 수시포(수세보) ⑥, 칠성판 ⑦, 받침대, 수시베개, 수시이불, 한지(지매용)
탈지면, 알코올 등

고인안치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합니다. 이때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라
보관키를 인수받습니다. ** 장례식장별 상이

빈소설치 (장례용품 선택, 화장시설 예약)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하고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
하여 빈소를 선택합니다.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⑧를 설치합니다.

※ 장례용품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을 선택하고 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합니다.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과 인원예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화장시설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 또는 장례식장 직원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화장시설 예약을 합니다.

부고

부고장 양식을 참조하여 부고장, 문자 작성 후 발송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대행하기도 합니다.

** 58~59p 부고작성 예시 참조

상식과 전 ⑨

장사를 하기전 해가 뜨면 조전, 해가 지면 석전을 제단에
올리고, 조전과 석전이 끝나면 술과 과일을 남기고 상식을
올립니다.

⑥ 수시포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
⑦ 칠성판 시신을 올려놓기 위해 7개의 구멍이 뚫린 판

⑧ 영좌 육체와 영혼을 대신하여 혼백을 놓아 사자를 대신함.
⑨ 상식과 전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2 일차



염습 (殮襲)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 염습용품

수의, 멧베^⑩, 염보, 베개, 습신^⑪ 등

반함 (飯含)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재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습니다. 반함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 반함순서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 → 좌측 → 중앙 순으로 넣습니다.

입관 (入棺)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받치 쪽에 세웁니다.

※ 입관용품

관, 보공^⑫(초석), 입관부속물, 소창^⑬(결관버), 관보^⑭, 명정^⑮, 예단, 횡대^⑯, 공포

성복 (成服)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주,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합니다.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합니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⑰은 탈상^⑱까지 합니다.

성복제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에게 제례를 드리며, 종교가 있을 시 종교별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로 진행합니다.

※ 문상객 접객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으나, 현대에는 1일차부터 문상을 받기도 합니다.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⑫ 보공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빈곳을 채우는 일. 입관할 때는 관 바닥에 한지를 보통 열한장을 깔고 창호지를 두루마리로 말아 시신을 넣고 관의 남은 공간은 보공한다.
- ⑬ 소창 영구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천 또는 띠
- ⑭ 관보 영구를 덮는 천으로 된 덮개
- ⑮ 명정 고인의 관직이나 성명을 기록한 기로서 붉은 천에 은분이나 흰색글로 씁니다.
- ⑯ 횡대 매장할 때 영구 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덮는 나무토막 혹은 널빤지
- ⑰ 상장 장례를 마친 후 상을 당했다는 표시
- ⑱ 탈상 남자, 삼베리본 왼쪽 가슴에 부착, 여자, 무명천 리본(머리핀)을 머리에 부착
한사람의 죽음에 따른 상례 절차의 마지막

- ⑩ 멧베 시신에 수의를 입힌 후 삼베 이십자(尺) 한필을 일곱 쪽으로 잘라서 다시 각 한쪽의 반 정도를 3등분하면 21매개가 되는데 이것으로 시신을 묶을 때 사용합니다
- ⑪ 습신 시신에 신기는 신발

3 일차



발인(發靛)

영구가 집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 발인제를 드리거나 종교에 따라 발인 예배 또는 영결식 등을 합니다. 영결식은 고인의 유언과 유가족의 합의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운구(運柩)

발인이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장의차량으로 운반하는 절차입니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합니다.

매장(埋葬)

① 장지도착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지 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하도록 합니다.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필요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

② 하관

하관이란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유가족 등은 곡은 하지 않습니다.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고 횡대를 가로로 걸친 후 유가족은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리거나 취토를 합니다.

③ 성분(봉분)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덮고 봉분을 만들어 잔디를 입힙니다. 봉분이 마무리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어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산신제, 평토제

- 산신제는 향 모사없이 지내며,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합니다.
- 평토제는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도 하며,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 산신제,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⑤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 개인, 종중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
- 법인, 재단,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화장 (火葬)

화장시설 도착

화장시설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신을 화장로로 운구하도록 합니다.

㉓ 화장서류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

유골수습

화장한 유골을 봉안함 또는 자연장함에 담거나 분골 후 담기도 합니다.

※ 자연장함

생분해성 수지,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능, 굵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며, 자연장의 경우 유골은 반드시 분골하여야 함

화장증명서 인수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인수하여 봉안 및 자연장 시 관계자에게 제출합니다.

※ 봉안 또는 자연장

-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 자연장지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장례 후 의례

장례(발인)를 치르고 돌아와서는 반혼제 ㉑나 초우제 ㉒, 재우제 그리고 삼우제를 지냅니다. 이후 졸곡 ㉓, 소상 ㉔, 대상, 담제 ㉕, 길제 ㉖가 행해지기도 하나, 49일이나 100일에 탈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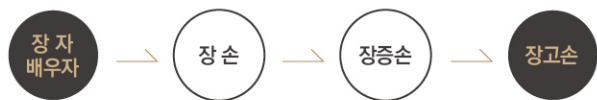
현대 상례는 기존 3년 이었던 상례기간을 대폭 간소화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례보다는 장례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통 3일간의 장례와 삼우제로 상례의 전 과정이 5일로 간략화되어 진행되고 매장 화장 절차가 마무리된 날 탈상하는 때도 많습니다.

상주의 의미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장자’를 ‘주상(主喪)’이라 하여 상가에서 제전(祭奠) ㉑을 주장하여 맡아보는 사람, 즉 상주(喪主)를 일컬었습니다. 상주는 보통 망자의 맏아들 또는 맏아들이 없는 경우 맏손자가 상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건전가정의례준칙」(2019. 7. 2)에서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됩니다. 이중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고 사망자가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

- | | |
|-------|--------------------------------------|
| ㉑ 반혼제 | 혼은 돌아온다는 의미 |
| ㉒ 초우제 | 초우제 (장례당일), 재우제 (장례의일), 삼우제 (장례 삼일째) |
| ㉓ 졸곡 | 곡을 그치는 것 |
| ㉔ 소상 | 소상 (사망 후 1년 후 지냄), 대상 (사망 후 2년 후 지냄) |
| ㉕ 담제 | 상복을 벗는 다는 의미 부모상의 경우 대상 후 3개월 후 시행 |
| ㉖ 길제 | 담제 후 한달 뒤 시행 |
| 제전 | 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

상주의 우선순위



① 죽은 사람의 장자(長子), 배우자 → 장자가 없으면 장손 → 장손도 없으면 장증손 · 장고손의 차례로 됩니다.

②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자가 됩니다. 아내의 상(喪)에는 남편이 됩니다.

③ 자녀상 중에서 자녀의 후사가 없을 경우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가 주상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제의 의미

상주 외의 상복을 입는 사람들을 '상제(喪制)'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부의 의미

상사에서 안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주부(主婦)라 하는데 주부는 죽은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됩니다.

복인의 의미

고인의 8촌이내의 친족

완장 또는 상장

검정예복 왼쪽 팔에 완장을 착용하거나 왼쪽 가슴에 상장을 부착합니다. 상황에 따라 생략하기도 합니다.

두 줄	상주 - 상제 중	만이가 되는 자
한 줄	상제 - 상주 이외의	형제자매
무 줄	상주 외의	복인들, 8촌 이내

국가장

국가장(國家葬)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하며 2011년 8월 31일 시행된 국가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 ·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결정으로 국가장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구,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맡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로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합니다.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종교

宗教

74

종교별 장례

77

“

임종이 가까워오면 신앙적으로 준비를 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종교별로 장례의 절차와 방법이 다양하여 종교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종교별 장례

불교

불교에서는 장례식을 다비식(荼毘式)이라고 하는데 '다비'란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비식은 불교의 의례 규범인 석문의범(釋門儀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 자세하지는 않고 다만 추도의식의 순서만 그에 따라 장례의식을 거행합니다.

다비식 순서

개식 開式	호상이 맡아서 합니다.
삼귀의례 三歸依禮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 한다는 의식을 주례승이 행합니다.
약력보고 略歷報告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뜻에서 생전에 고인과 가까웠던 친구가 합니다.
착어 着語	고인을 위해 주례승이 부처의 가르침을 설법(說法) 합니다.
창혼 唱魂	극락에 가서 편안히 잠들라는 것으로 주례승이 요령(搖領)을 흔들며 고인의 혼을 부릅니다.
헌화 獻花	친지 대표가 고인의 영전에 꽃을 바칩니다.
독경 讀經	주례승과 모든 참례자가 고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부처님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경문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추도사 追悼辭	초상에는 조사(弔辭)라고 하며 일반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소향 燒香 모든 참례자들이 향을 태우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홍서원 四弘誓願 주례승이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중생무변 서원도 (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의 수가 많지만 모두를 교화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
- 번뇌무진 서원단 (煩惱無盡誓願斷)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나 번뇌를 끊겠다는 것.
- 법문무량 서원학 (法門無量誓願學)
한량없는 법문을 남김없이 배우겠다는 것.
- 불도무상 서원성 (佛道無上誓願成)
최상의 불도를 이루겠다는 것.

폐식 閉式 영결식 절차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 종파별, 사찰별로 식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9재

49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매 7일째마다 7회에 걸쳐서 49일 동안 개최하는 불교의식이며,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합니다.

49재의 계산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잡아, 그 다음 날부터 7일로 첫재이며, 그 다음 7일이 이재, 삼재, 사재, 오재, 육재, 마지막 칠재가 사십구재입니다.

백일재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로 49재를 지낸 절에서 행하며 사람이 죽은 지 백일이 되는 날에 드리는 불공입니다.

기독교

기독교식 장례는 사람이 소천한 다음, 시신의 수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과 절차가 목사의 집례 아래 이루어집니다. 소천과 더불어 찬송과 기도로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의 예배를 드립니다.

초종²⁶ 중에는 매일 기도회를 갖고, 유가족은 빈소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하며 기독교식 장례가 일반 장례와 다른 점은 곡을 하지 않고 음식도 차리지 않으며 절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조석으로 전을 올리거나 상식을 올리지 않으며, 염습할 때 매장포로 묶지도 않습니다.

장례식 전날 염습을 마치고 입관예배를 드리며, 이때는 반드시 목사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은 영구를 교회 안에 안치하여 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빈소 또는 상가(喪家)에서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장례에서는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화장예배, 위로예배 등이 있습니다.

※ 기독교 장례는 각 교파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²⁶ 초종 임종 전부터 임종 후 부고를 내기까지의 상례의식

임종예배

임종예배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천국을 소망케하고 남은 가족에게 신앙적 용기를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서 묵도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말씀선포 ▶ 기도 ▶ 찬송 ▶ 광고 ▶ 주기도문

입관예배

입관예배는 고인의 시신을 관속에 넣은 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입관 전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 묵도 ▶ 신앙고백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말씀선포 ▶ 기도 ▶ 찬송 ▶ 광고 ▶ 축도

발인예배

발인예배는 고인의 시신이 집(장례식장)에서 떠나 장지나 화장시설로 가기에 앞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서 개식사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말씀선포 ▶ 기도 ▶ 고인의 약력소개 ▶ 주기도문 ▶ 찬송 ▶ 헌화 ▶ 출관

하관예배

하관예배는 시신을 묻을 때 관을 무덤의 구덩이에 내려 놓거나 화장 후의 유골을 땅속에 묻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서 묵도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말씀선포 ▶ 찬송 ▶ 축도 ▶ 취토

취토 : 상제들이 봉분 전에 흙 한줌씩을 관위에 뿌리는 의례

화장예배

화장예배는 화장시설에 도착하여 별도의 제례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구차에 관을 모신 문을 열어놓고 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순서 묵도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설교 ▶ 기도 ▶ 축도

위로예배

위로예배는 매장 또는 봉안, 자연장 후 집으로 돌아와 헤어지기 전에 드리는 예배로 유족들이 피곤한 상태이므로 짧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묵도 ▶ 찬송 ▶ 말씀 ▶ 기도 ▶ 축도

※ 모든 예배의 순서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죽음을 공포나 심판 등의 어두운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에 계시는 하느님 곁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2018년 편찬한 『상장 예식^㉒』에 따르면 천주교의 장례절차는

- ① 임종과 운명 ② 위령기도 [연도] ③ 염습과 입관 ④ 장례
⑤ 우제 ⑥ 면례로 나뉩니다.

장례절차

임종과 운명

임종 환자의 병이 위독해지면 가족들은 집 안팎을 깨끗이 하고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임종을 맞을 장소로 옮깁니다. 준비가 끝나면 가족들은 죽음을 앞둔 이에게 일생의 귀감이 될 유언과 마지막 축복을 청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손에 십자가나 묵주를 쥐어 주고 화살기도^㉓를 바치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가 아직 병자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사제에게 병자성사를 받고 노자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운명 환자의 죽음을 확인하면 턱을 괴어 입을 다물게 해줍니다. 임종예식을 거행하는 중에 환자가 운명하면 임종예식을 중단하고 운명예식을 거행합니다. 시신이 굳기 전에 수시를 하고 양손을 배 위에 모아 놓고 십자가나 묵주를 쥐어 줍니다. 그리고 병풍이나 휘장을 쳐서 시신을 가리고 그 앞에 상을 마련하여 십자가와 고인의 사진 이름과 세례명을 새긴 패를 세우고 촛불과 성수, 향로와 향을 준비하여 예를 행합니다. 첫 분향은 상주가 합니다.

위령기도 (연도)

상가에 도착하면 빈소에 성수를 뿌리고 분향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다른 문상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자리에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식을 마치면 신자들은 시신을 향하여 성수를 뿌리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적절한 예를 표하고 빈소에서 나옵니다. 성수를 뿌리는 동안 신자들은 적절한 성가를 부릅니다.

염습과 입관

염습을 하는 봉사자는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주례는 예식을 시작합니다. 염습을 하는 사람은 향물이나 쑥물 또는 다른 소독수를 솜이나 보드라운 헝겊에 적서 시신을 정성껏 씻기고 수의를 입힙니다. 염습이 끝나면 시신을 관에 넣고 시편을 노래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촛불을 켜서 돕니다. 예식을 마치면 성수를 뿌리고 관을 닫습니다.

㉒ 상장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상장예식(201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㉓ 화살기도 하느님에게 순간적으로 느끼는 정과 바라는 생각을 바치는 기도

장례

장례는 고인을 가족과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는 예식이며, 출관과 장례미사로 되어있습니다.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말씀 전례를 거행합니다.

출관

주례는 출관에 앞서 상주를 비롯한 유가족을 관 앞에 나오게 하고 기도를 바칩니다. 운구에 앞서 유족은 고인에게 경의와 애도의 표시로 분향과 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시인과 시인을 모셨던 방과 그 주위에 성수를 뿌립니다. 운구를 하는 동안 시편이나 알맞은 성가를 부릅니다.

장례미사

① 시작예식

영구 앞 묵례 (고인과 유족 조의) ▶ 성수 뿌린 후 행렬 ▶ 성가 (입당송 등) ▶ 영구안치 (복음서, 성경 영구에 놓고 파스카 초 영구 머리 쪽 배치) ▶ 본기도

② 말씀전례

제 1 독서 ▶ 화답송 ▶ 제 2 독서 ▶ 복음 환호송 ▶ 복음 ▶ 보편 지향기도 ▶ 예물기도 ▶ 위례 감사송 ▶ 영성체송 ▶ 영성체 후 기도 ▶ 주님의 기도

③ 고별식

- 영성체 후 기도를 마친 후 거행하거나 보편지향기도 다음에 고별식을 진행합니다.
- 사제가 영구앞으로 나올 때 유족은 촛불을 켜고 영구 주위에 둘러 섭니다. 봉사자는 성수와 향로를 들고 사제 옆에 서고, 십자가를

든 봉사자는 영구 머리쪽에 선 후 기도합니다. 이후 성수를 뿌리고 향을 드린 후 성가를 부릅니다.

※ 장례미사는 의무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대림 사순 부활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운구

모지로 가면서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시편이나 위령기도 (연도)를 반복하고 알맞은 성가를 부릅니다.

하관 (매장 시)

묘역에 도착하면 알맞은 장소에 영구를 모서 놓고, 절하고 분향한 다음 기도 이어 무덤 축복 후 하관예식을 진행합니다.

무덤 축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영구안장 유가족은 초를 켜 둘 ▶ 주례분향과 성수를 뿌린 후 성경봉독 청원기도 ▶ 유가족을 위한 기도 순으로 하관예식을 진행합니다.

화장

성당을 떠나 화장시설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예식은 운구예식을 따르고 화장시설에 도착하면 화장예식을 진행합니다. 봉안 또는 자연장 시 유골함을 운구하는 동안 운구예식을 반복하고 봉안할 때에는 운구와 하관예식을 따릅니다. 자연장 할 때에는 자연장하는 곳에 봉안당에 모실 때에는 봉안당에 유골을 모시고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 제

시신을 묘소에 두고 돌아온 다음 영혼을 달래어 안정 시키려고 초우, 재우, 삼우를 지냅니다.

• 초 우

장례를 치른 날 집에 돌아와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지냅니다. 가장이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주례하고 예식을 진행합니다.

• 재 우

초우를 지낸 다음날 재우를 지내며 예식은 초우때와 같습니다.

• 삼 우

삼우날에는 유가족이 모두 미사에 참례한 다음 묘소를 찾아 삼우제를 지냅니다.

면 례

이 예식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무덤에 안장했던 시신의 유골을 추려 납골당이나 다른 곳으로 이장할 때에 사용합니다.

葬 禮

장사

장사

방법

葬事

86

장
사
방
법

89

“장사란 시신과 유골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으로 화장 후 골분을 자연장하거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방법

매장

“매장”이란 시신이나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의 시기

매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전에 매장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사설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등

매장의 방법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장의 절차

① 개인, 종중묘지

운구 ▶ 하관 ▶ 유족 취토 ▶ 성분 ▶ 성분제 (평토제)

② 공설묘지 등

묘지도착 ▶ 관리사무소 서류접수 ▶ 매장지 운구 ▶ 하관 유족 취토 ▶ 성분 ▶ 성분제 (평토제)

매장신고

① 신고유형	사후신고제
② 신고의무자	매장을 한 자
③ 신고기한	매장 후 30일 이내
④ 신고기관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화장

“화장”이란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의 시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화장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됩니다.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사찰경내의 다비의식으로 화장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화장의 절차

화장예약 ▶ 운구 ▶ 접수 ▶ 화장 ▶ 분골 ▶ 유골과 화장
증명서 인수 ▶ 안치장소로 이동

화장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에도 동일)

유의사항 화장 시 화학 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신고

- | | |
|---------|-----------------|
| ❶ 신고유형 | 사후신고제 |
| ❷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 ❸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화장 당일
화장시설에 도착하여 접수할 때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화장
시설에서 신고 처리하여 줍니다.

시신의 화장신고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시설에 비치된 화장신고서 제출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개장지 읍·면·동장이 발행한 개장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화장
신고서 제출

자연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수목·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친환경 장법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종·문중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자연장 종류



잔디형



화초형



수목형



수목장림

잔디형 화장한 골분을 지정된 잔디 아래에 묻는 방법

화초형 화장한 골분을 지정된 화초 아래에 묻는 방법

수목형 (산림이 아닌 지역)

화장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는 방법

수목장림 (산림지역)

기존의 나무 밑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장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산림

자연장 방법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됩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용기의 재질

- 생분해성 수지 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굽지 않은 토기 등)

봉안(납골)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여러 형태의
시설물에 안치하는 것으로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공설봉안시설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봉안
시설

- 공설봉안묘 (탑, 담)
- 공설봉안당

사설봉안시설

개인, 가족, 종 · 문종, 종교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봉안 시설

- | | |
|----------|----------------|
| • 개인 | 봉안묘, 담, 탑 |
| • 가족 | 봉안묘, 담, 탑, 봉안당 |
| • 종 · 문종 | 봉안묘, 담, 탑, 봉안당 |
| • 종교단체 | 봉안묘, 담, 탑, 봉안당 |
| • 법인 | 봉안묘, 담, 탑, 봉안당 |

사설봉안시설 신고

- | | |
|---------|----------------------|
| ❶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 (수리가 필요한 신고) |
| ❷ 신고의무자 |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자 |
| ❸ 신고기관 | 관할 시장 등 |

해양산분

“해양산분”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제를 지내며, 지정된 부표 혹은 장소에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거나 특수 유골함을 띄내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해양산분 기준 및 방법

〈출처〉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 6. 19)

-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합니다.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합니다.
-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장 改葬

96

개장

99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장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도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평탄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신고

- 신고유형 사전신고제
- 신고의무자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구 분	기 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㉔ 와 개장지 ^㉕ 양쪽에 각각 신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 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묘지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신고
공설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공설묘지 관할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에게 신고

㉔ 현존지 현재 시체와 유골이 있는 곳
 ㉕ 개장지 시체 또는 유골을 이전한 장소

개장허가

- ① 신고유형 사전허가제
- ② 허가신청 의무자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
- ③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④ 허가신청 기관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
- ⑤ 구비서류
 - ① 기존 분묘의 사진
 - ②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⑤ 통보문 또는 공고문

98

개
장

99

개장절차

0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본인의사)

사전신고 후 개장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개장해야 합니다.

- 불법분묘의 설치자 · 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허용
- 타인의 묘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동일

0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집단묘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해도 연고자가 해당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단묘지 설치자가 다음 절차에 따라 해당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100

개
장

101

①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해야 합니다.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②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해야 합니다.

-
-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③ 묘지관리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
-

03

토지소유자나 묘지 설치자가 자신의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①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합니다.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개장해야 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 한 후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합니다.

②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의 개장

- 분묘기지권은 타인이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에 취득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으로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권리입니다.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개장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③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등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기간 만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해 분묘의 사진과 게재를 증명하는 모든 공고문,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개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합니다.

04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❶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확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해야 합니다.

❷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5년이며, 봉안한 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❸ 자치단체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 확인을 요구하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예시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면 리

분묘기수 5기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안치장소 경기도 구리시

안치기간 10년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신고처 ○○○ (연락처:)

신고요령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가첩, 족보,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년 ○월 ○일

위 공고인 : ○○○

葬禮

문상 問喪

Part.

04

문상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Condolences

문상절차

문상예절

- 문상시기
- 문상 시 옷차림
- 부의봉투 작성방법
- 문상 시 인사말
- 문상 시 삼가야 할 일
- 종교별 문상예절

문상 절차

問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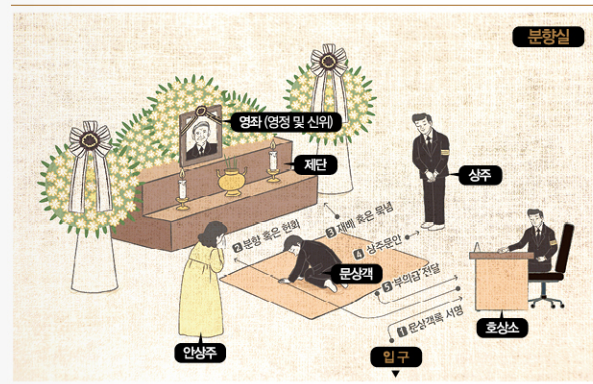


“

문상(問喪)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일로 상가에 도착하면
절차에 따라 문상을 하시면 됩니다.

”

문상절차



① 상가(빈소)에 도착하면 문밖에서 외투나 모자 등을
미리 벗어 두고 호상소에 있는 문상객록에 서명합니다.

② 분향 및 헌화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일 경우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 위에 놓는데 이때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바칩니다.

선향 線香 (막대 향)일 경우

하나 또는 두개를 집어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 손가락
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거나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끄고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두 손으로 공손히 향로에 꽂는데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나 여러 개일 경우 반드시 하나씩 꽂아야 합니다.



오른속으로 향 1개나 3개를 잡은 뒤
촛불로 불을 붙인다.
단, 이미 향로에 향이 있을 경우 1개만 피우는 것이 좋다.



불은 왼손으로 가볍게 부채질 하거나 흔들어 끈다.
절대 입으로 불어서는 안된다.



향을 잡은 오른손을 왼손으로 받치고 공손히 향로에
꽂는다. 향을 여러개 꽂을 경우, 반드시 하나씩
꽂는다.

헌화^㉔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꽃줄기 하단을 가볍게 잡고 왼손바닥으로
오른손을 받쳐 들어 두 손으로 공손히 꽃 봉우리가 영정
쪽으로 향하게 하여 재단 위에 헌화한 뒤 잠깐 묵념 및
기도를 합니다.



헌화를 할때는 오른손으로 꽃 줄기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다.



꽃 봉우리가
영정사진을 향하도록 올린다.

공수법

③ 영좌 앞에 일어서서 잠깐 묵념 또는 두 번 절합니다.



- ①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한다.
- ② 공수한 손을 눈높이에 올린다. 이때 손바닥과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 ③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잡고, 왼쪽 무릎부터 꿇는다.
- ④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

** 남성 오른손이 위



- ① 왼손이 위로 오도록 한다.
- ② 공수를 풀고, 양쪽 무릎이 동시에 바닥에 닿도록 무릎 꿇고 앉는다.
- ③ 양손으로 무릎 앞쪽을 짚으며 절한다.
- ④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한다.

** 여성 왼손이 위

④ 영좌에서 물러나 상주와 맞절을 합니다. 종교에 따라 절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해도 됩니다.

- 평소 안면이 있는 경우라면 상주에게 문상 인사말을 건네는데
이때는 낮은 목소리로 짧게 위로의 말을 하되 고인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문상이 끝나고 물러 나올 때에는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난 뒤, 몸을
돌려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⑤ 호상소에 있는 부의금함에 부의금을 전달합니다.

절하는 방법

절의 준비 자세



여

- ①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 양옆에 둡니다.
손 모양 손가락을 모두 모아 가볍게 오므립니다.

- ② 공수한 손을 허리에 놓습니다.
공수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습니다.

남

- ①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 양옆에 둡니다.
손 모양 손가락을 모두 모아 가볍게 주먹을 칩니다.

평절(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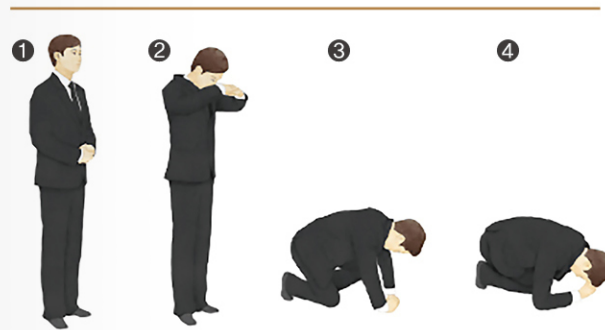
- ① 자세를 바로 하고 공수한 손을 허리선에 두고 바로 섭니다.
② 공수한 손을 풀어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 꿇고 앉 습니다.
③ 양손을 무릎 앞부분 양 옆의 바닥을 짚으며 절합니다.
④ 유가족에게는 한번 절 합니다.

큰절(여)



- ❶ 자세를 바로하고 공수한 손을 허리선에 두고 바로 섭니다.
- ❷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리고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눈은 다소곳이 발등을 향합니다.
- ❸ 공수한 손을 눈높이에 둔 채 무릎 꿇고 앉습니다.
- ❹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합니다.
- ❺ 고인에게는 두번 절하고, 유가족에게는 한번 절 합니다.

큰절(남)



- ❶ 자세를 바로 합니다.
- ❷ 공수한 손을 눈높이로 올리고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고 눈은 발등을 향합니다.
- ❸ 왼발을 조금 뒤로 빼면서 공수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습니다. 왼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 무릎을 꿇습니다.
- ❹ 몸을 앞으로 깊이 숙여 절합니다.
- ❺ 고인에게는 두번 절하고 유가족에게는 한번 절 합니다.
평절의 경우 공수한 손을 가슴높이로 올릴 뿐 나머지 방법은 큰절과 같습니다.

문상예절 問喪禮節

114

문
상
예
절

115

“

문상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갖추어 고인을 추모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따듯하게 위로하는 인사말을 준비하여 문상
토록 합니다.

”

문상시기

상가에 가면 우선 유가족을 위로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 있게 수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문상을 합니다.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성복^②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상을 당한 직후에는 문상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별로 개념치 않고 돌아가신 직후 문상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상 시 옷차림

우리 조상들은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관계로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복을 입는
관계로 무채색계통의 옷차림이 무난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합니다.

② 성복 유가족이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하며, 통상 입관 후 성복을 합니다.

복장



남성

현대의 장례예절에서는 검정색 양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나 검정색 양복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 양복도 무방합니다.

와이셔츠는 흰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넥타이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여성

검정색 상의에 무채색계통의 하의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 검정색 구두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필히 착용하여 맨발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색채 화장이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도 가능하면 피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합니다.

부의봉투 작성 방법

봉투에는 '부의^㉓'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근조^㉔', '조의^㉕', '전의^㉖', '향촉대^㉗'라고 쓰기도 합니다.



부의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쓰는데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하며, 부조하는 물목(物目)이 동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고 씁니다.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㉘', '근상(謹上)^㉙'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부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부의금을 받기도 합니다.

- ㉓ 부위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 ㉔ 근조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
- ㉕ 조의 남의 죽음을 슬퍼함.
- ㉖ 전의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 ㉗ 향촉대 상에 켜는 촛값 정도의 약소한 성의를 뜻하는 말.
- ㉘ 근정 물품이나 편지 따위를 삼가 드림.
- ㉙ 근상 삼가 올림이라는 뜻으로, 편지 끝의 자기 이름의 아래에 쓰는 말.

부의봉투 작성 방법



• 부익봉투 앞면

李 喪家宅 護喪所入納 (이 상가택 호상소입납)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기도 하며, 생략하고 부의, 근조, 조의 전의, 향축대 등을 봉투 앞면 중간에 세로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 부익봉투 뒷면

- ① 이름은 봉투 뒷면 가운데 선 기준 왼쪽 아래에 세로로 작성합니다.
- ② 이름 하단에 근상 또는 근정을 적기도 합니다.
- ③ 소속은 이름의 오른쪽에 붙여서 세로로 작성하거나 가운데선 기준 오른쪽 상단에 작성합니다.
- ④ 주소는 가운데 선 기준 오른쪽 상단에 세로로 작성합니다.

단자 작성 방법

예



• 단자 (오른쪽부터 작성)

- ① 謹弔(근조)
- ② 海州後人^㉔(해주후인) 이〇〇公 喪事(상사)
- ③ 金壹萬圓 (금일만원) 年(년), 月(월), 日(일)
- ④ 李喪家 護喪所 (이상가 호상소) 〇〇〇 再拜^㉕(재배)

※ 단자는 삼등분 하여 문구, 금액, 이름 등으로 나누어 접었을 때 접히지 않도록 하고 아래에 1cm 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립니다.

㉔ 海州後人 (해주후인)

본관 (개인의 시조가 난 곳 또는 성의 출처지)

㉕ 再拜 (재배)

윗어른에게 쓰는 편지에서 편지 끝 자기 이름 뒤에 쓰는 말

문상 시 인사말

문상 시 인사말은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적절하게 건네는 것이 좋으며 격식이나 형식을 차린 표현보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상인 경우

- ①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②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 ③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뵈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내상인 경우

- ①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 ②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③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뵈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상인 경우

- ① “상사에 어떻게 말씀을 여쭙지 모르겠습니다.”
- ②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형제상인 경우

“형제자매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자녀상인 경우

- ①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 ② “참척(慘戚)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고인이 연하일 경우 문상 방법

고인에게 절하는지 여부는 고인이 연하일 경우는 통상 절하지 않으며, 고인이 연상일 경우는 절하는 것이 도리이나, 고인의 사망성격(순직 등)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연하 일지라도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하인 상주에게 절하는지 여부

상주 나이가 연하일 경우에는 문상객이 먼저 절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문상시는 상주가 먼저 절을 하면 답례를 할 뿐입니다.

조문 (예시)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 고인의 별세에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 뜻밖의 비보에 애통함 금할 길이 없습니다.
- 갑작스러운 상사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평소 고인의 은덕에 감사드리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삼가 조의를 드리며 주님(천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삼가 조의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 삼가 조의를 드리며 극락왕생하시길 바랍니다.

문상 시 삼가야 할 일

문상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상 시 삼가야 할 일 등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족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계속해서 말을 시키는 것은 실례가 됩니다.
-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문상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 또한 실례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망인이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을 때 일반적으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는데 이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별 문상예절

종교별로 문상예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셔서 문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교식, 유교식

- ❶ 상주에게 목례 합니다.
- ❷ 분향 또는 헌화 후 두 번 절하고 허리를 공손하게 굽혔다가 펴면서 인사 합니다.
- ❸ 상주와 맞절 또는 목례 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천주교식

- ❶ 상주에게 목례 합니다.
- ❷ 성수가 묻은 붓을 잡고 영정사진 왼쪽 → 오른쪽 → 가운데 순으로 성수를 뿌리고 기도 합니다.
- ❸ 분향 또는 헌화 후 두 번 절하고 허리를 공손하게 굽혔다가 펴면서 인사 합니다.
- ❹ 상주와 맞절 또는 목례 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기독교식

- ❶ 상주에게 목례 합니다.
- ❷ 헌화 후 잠시 묵념 합니다.
- ❸ 상주와 맞절 또는 목례 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葬禮

葬禮後

장례 후

Part.

05

장례 후 준비사항

Preparations after
Funeral

사망신고

답례인사

재산조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관련 |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유족연금

유품정리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마 무 리

126

사
망
신
고

129

“

장례가 끝나면 답례인사를 드린 후 고인의 사망신고를 완료
하고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과 연금신청, 보험수령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신고기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신고의무자

- 친족·동거자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③ 신고장소

- 방문신청(시, 구, 읍, 면, 동) 또는 우편신청
- 인터넷 신청 불가능

④ 제출서류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답례인사

답례인사는 형식이나 기간 등의 틀이 따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방명록을 확인하고 장례에 참석하여 조문한 이들에게 정성스럽게 답례 인사장을 편지나 엽서, 전화나 문자의 형태로 발송합니다.

답례인사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하되, 감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례에 참석하여 주시고
따뜻한 조문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여의치
못해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대신 인사드리오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각별한 정성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 년 월 일
○○○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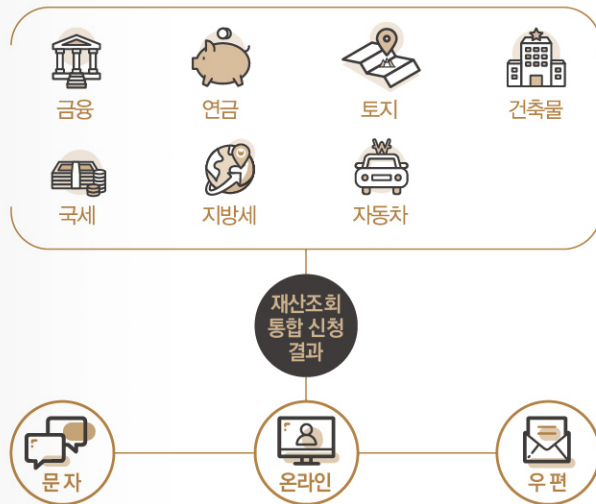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 이후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해 6종의 재산조회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망자의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 토지·자동차, 세금,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 유무의 재산조회를 시, 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여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
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3순위의
경우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류

① 신청인 (상속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 ·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 접수 →
접수증 출력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www.gov.kr>)

① 신청인 (상속인)의 공동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처리결과

▶ 재산조회 결과 통보



지방세, 토지정보, 자동차, 건축물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통지 (문자, 우편, 직접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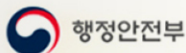


국세, 금융, 국민연금 등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통지(문자 또는 해당 홈페이지)

⑤ 참고사항

- 신청서 접수시 사망자의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되므로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취소 (변경)는 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시 (18시)까지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7. 8. 31.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고인의 유산 조회,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 접수 →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채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자녀, 배우자), 제2순위(부모,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장소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확정증명원		
처리절차	신청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	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 [금융] 문자 또는 www.fss.or.kr · [국세] 문자 또는 www.hometax.go.kr · [국민연금] 문자 또는 www.nps.or.kr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문자 · [토지·지방세]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자동차] 접수처에서 안내 (온라인 신청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55,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88-4110,
(군인연금)국방부 ☎1577-9090, (토지·지방세·자동차) 가까운 시·구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서비스는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범위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 · 지방세 · 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14.9.1.부터 제공)

조회대상 금융회사

- ① 예금보험공사, 은행
- ② 한국신용정보원, 신보 · 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 평가정보 · KCB · 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 ③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 ④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접수처

- 금융감독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센터,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센터, 교보생명 고객센터, 삼성화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 조회가 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회절차

-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에서 접수된 조회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조회요청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여부 및 예금액, 채무액을 해당 금융협회 등에 통보
- 각 금융협회 등은 조회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받으신 후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상속인금융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대국민 편의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 금융기관의 금융채권 및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채납 정보, 공공정보, 상호회사 가입여부, 각종 연금가입여부 등 비금융정보도 제공

1

신청대상

- 조회 대상자 | 사망자, 실종자, 파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신 청 인 | 상속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 민법에서 정하는 1순위 상속인 중 누구라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문, 신청서, 위임장, 외국인 사망자 대상 신청서류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대리인 또는 후견인 접수시 구비서류는 국민연금 1332(ARS 2번)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접 수 처 | 금융감독원 본 · 지원, 전 은행지점, 농 ·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 사망후 6개월 이내에는 각 지자체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조회가 가능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가능)

3

결과조회 ▶ 신청일로부터 7~2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 · 신고 - 상속인조회)를 통한 일괄조회 또는 각 금융협회 및 기관 홈페이지(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통한 개별조회가 가능합니다.

4

상속관련 유의사항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조회대상자 명의의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 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속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민법에서 정하는 1순위 상속인의 경우 누구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금, 보험금지급 등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행사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금융감독원



대한장례협회
Korea Funeral Association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

- 국민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시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배우자의 부모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위의 요건에 해당자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자세한 수급조건 및 연금액 등은 개인별 상이하니 국민연금공단 (☎1355) 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대상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애연금수급자 사망시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시
- ※ 10년 미만 재직시 유족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수령

유족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 공무원 재직당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공무원 재직당시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태아포함) 수급자 사망당시 만 19세 미만 또는 1~7급 이상 장애를 가진 경우
- 공무원 재직당시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 (태아포함) 수급자 사망당시 만 19세 미만 또는 1~7급 이상 장애를 가진 경우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 입양된 양부모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 입양된 양조부모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선수위가 수령, 배우자는 선수위와 동순위가 되어 연금 균등수령
- 연금 수급자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손자녀)의 장애등급 7급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19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종료

※ 수급조건과 연금액, 서류 등의 상담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1355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geps.or.kr>

1588-4321

사학연금 유족연금

대상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때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의 범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 재직당시 혼인관계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인 자녀직당시 혼인관계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의 부가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제1급~제7급인 자

(조)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96. 1.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 (조)부모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한 때
- 재혼(사실혼 포함)한 때

-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자녀,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한 때
- 장애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

※ 수급조건과 연금액, 서류 등의 상담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

대상

- 퇴역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때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대상

-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 퇴직 ·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140

유
족
연
금

1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tp.or.kr>
 1588-4110



군인연금
<https://www.mps.mil.kr/>
 1577-909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https://www.popa.or.kr/>
 02) 3278-7700

유품정리

떠나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아있는 가족으로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유품을 정리할 때에는

먼저,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편리합니다.

① 귀중품 ② 추억의 물건 ③ 의류 ④ 가구 및 가전제품
⑤ 식료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귀중품과 추억의 물건은 유품 분배를 통해 유가족이 나누어 가지거나 폐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값이 나가는 귀중품의 처리 여부를 두고 유족 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고인이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품 정리 시 분류

- | | |
|-----------|-----------------------|
| ① 귀중품 | 금품이나 통장, 인감 등 직접적인 재산 |
| ② 추억의 물건 | 사진이나 편지, 앨범 등 |
| ③ 의류 | 의복이나 이불 등 |
| ④ 가구·가전제품 | 생활 가전이나 장롱 등 가구류 |
| ⑤ 식료품 | 냉장고 내의 신선식품이나 보존식 등 |

재활용품과 폐기물품 정리

고인의 유품은 유족이 보관하는 것과 폐기하는 것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족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직 잘 작동하기에 버리기는 아까운 가전제품들은 중고품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의 의류는 일부 소각을 하기도 하지만 현 옷 매입 업체에 매입되어 새 주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따로 보관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품정리사가 필요한 경우

- ① 장례 후 일정상 유품정리가 어려운 경우
- ②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 ③ 형제자매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
- ④ 큰 짐을 옮기는 데에 필요한 일손이 부족한 경우
- ⑤ 고독사로 유품정리가 어려움 경우 등

유품정리사

유품정리사란 고인의 유족을 대신하여 유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 시

序詩

윤 동 주
시인, 독립운동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序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葬禮

葬禮情報

장례정보

Part.

06

장례 관련
유용한
정보

Funeral
Information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내상조 찾아줘/내상조 그대로
표준약관
인체조직기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종합 가이드북
장례문화

장례 관련 유용한 정보

148

장
례
정
보

149

“

장사관련 시설 가격정보와 상조계약 유지여부 등을 확인하고
생활법령정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e하늘 장사 정보시스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예약 편의 제공, 화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투명성 확보, 장사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화장예약 단일화

화장예약 창구를 e하늘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유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예약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시설의 가동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현황 및 용품·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

지역별 장사시설 설치·조성 현황 및 용품·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조회 및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례 및 장사행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유가족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절차 및 문상절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매장·화장 등 장사방법 및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합니다.

사망정보 제공을 통한 국고누수 방지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에 따라 각종 연금 및 복지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국고가 누수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e하늘은 가장 빠른 사망정보 취득 및 제공 시스템으로 조기 취득한 사망정보를 각종 연금 및 급여 지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급 업무의 내실화와 국고누수의 원천적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https://www.15774129.go.kr/>
☎ 1577-4129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비자의 상조회사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
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내상조 찾아줘

- ④ 운영주체 공정거래위원회
- ④ 조회대상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
(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
- ④ 가입내역 조회 <https://www.mysangjo.or.kr/>

☞ 내상조 조회하기



※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회원사로 가입한
상조회사의 소비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 ☎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입니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④ 운영주체 공정거래위원회
- ④ 조회대상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
(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
- ④ 가입내역 조회 <https://www.mysangjo.or.kr/>



①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 신청

-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내상조찾아줘'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는 신분증, 소비자피해
보상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선수금 보전기관은 피해보상금 신청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 선수금 보전기관은 본인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소비자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신청

- 소비자는 아래의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 중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본인이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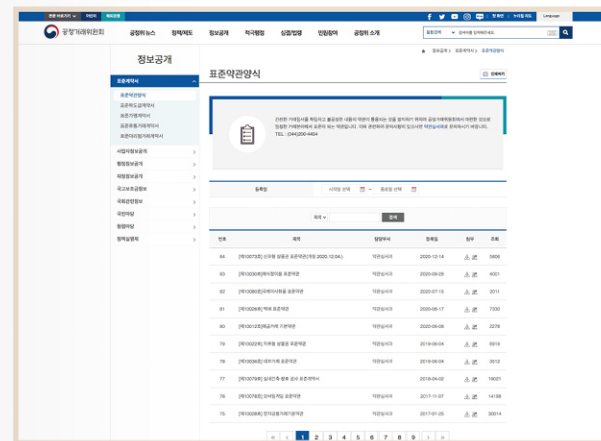
※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상조서비스 제공

- 향후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조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접속경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내 표준약관양식 검색

[제10029호]
[제10056호]

장례식장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 시 가능하며, 신체의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 개요

- ① 종류 피부, 뼈, 인대 및 건, 혈관, 연골, 심장 판막 근육, 신경 심낭, 양막 (생존시)
- ② 기증시기 사망 후 15시간 (냉장안치 시 24시간) 이내
- ③ 가능연령 만14세 ~ 80세까지
- ④ 이식시기 가공, 처리 및 보관을 거쳐 이식(최장 5년보관)
- ⑤ 특 징 인체조직은 누구에게나 이식할 수 있어 한 사람의 기증으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기증 가능

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서약 ▶ 사망 후 기증 접수 ▶ 유족 상담 및 조직기증 적합성평가 ▶ 조직채취 (조직은행 이송) ▶ 조직 기증 수술 후 수술복원 ▶ 유가족 인도



- ☎ 희망서약 상담문의
- ☎ 1544-0606
- 🌐 <https://www.koda1458.kr/>

- ☎ 장기조직 통보센터
- ☎ 1577-1458

생명나눔 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지 끝에 남아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은 먹지 않고
씨과실로 다시 땅에 심었다고 합니다.
땅에 심어서 새싹으로 키워내고,
다시 나무로, 숲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희망을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눔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서 또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세요.

지금,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눔은 어떤 치료를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뇌사상태인 경우에
타인을 위해 행하는 숭고한 나눔입니다.



KODA 홍보대사
오수진 KBS 기상캐스터
(심장이식수혜자)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정보를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장례관련 정보 찾기

- ① 생활법령정보 ▶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 ▶ 장사 (장례, 매장, 화장, 자연장)
- ② 생활법령정보 ▶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 ▶ 상속
- ③ 생활법령정보 ▶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 ▶ 유언



<https://easy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정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 |
|--------|---|
| ① 운영주체 | 행정안전부 |
| ② 조회대상 | 장례관련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입법예고 |
| ③ 홈페이지 | https://www.elis.go.kr/ |



※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도 조회 가능합니다.

귀천

歸天

천 상 병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새벽빛과 닿으면 스러지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잘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써진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語錄 중에서>

*It is uncertain in what place death may await
the therefore expect it everywhere.*

Lucius Annaeus Seneca
<Among the quotes>



葬禮

Korea Funeral Guide Book



葬禮